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36

발의연월일: 2021. 6. 21.

발 의 자: 어기구·김민철·김정호

김진표 • 윤건영 • 야진비

이수진 • 이용우 • 주철현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인원충원 소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다만,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이로 인한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수경비원의 나이 가 60세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
	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다만,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
	<u>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u>
	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
	<u>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u>
	퇴직된다.